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16

발의연월일: 2020. 6. 17.

발 의 자:정청래·이규민·이장섭

우원식 • 한정애 • 김주영

김경만 · 김영주 · 주철현

이원욱 · 오영환 · 남인순

이낙연 · 양이원영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회계처리를 기업회계기준 및 「정부기업예산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수신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있지 않아 수신료와 다른 재원을 통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음.

따라서 수신료의 집행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고 수신료 운용·관리의 투명성이 저해된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하고, 결산 시 수신료의 집행내역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해 국회의 승인 이후 1개월 이내에 이를 공표하도록 하고, 이사·집행기관의보수, 각종 수당의 수령 내역 및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 내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해 국민이 납부한 수신료 운용·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제55조

제2항 및 제3항 등).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2(이사·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1. 이사·임원의 보수 및 각종 수당 내역
- 2. 이사·임원의 업무추진비 내역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5조제2항 중 "企業會計基準"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사는 제64조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구분 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58조제1항 중 "한다"를 "하며, 운영계획에는 제64조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사용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9조제2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이를"을 "국회의 승인 이후 14일 이내에 결산서등을"로 한다.

2. 제64조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집행내역서 및 그 부속서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신료의 회계분리와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55조, 제58조제1항,
제59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혀 행

개 정 안

제15조의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 승인) ① 방송사업자 또는 중 계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해당 사업자의 출자자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자의 주식 또는 지분 을 합하여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가장 많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되 고자 하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 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 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을 한 방송채널사용 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고 자 하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 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이 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

제15조의2(이사·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1. 이사·임원의 보수 및 각종 수당 내역
- 2. 이사·임원의 업무추진비 내 역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 는 방송사업자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 출자자가되려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2. 제14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의 최다액 출자자가 되려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자: 방송통신위원회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할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심사하여야 한다.
- 1.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 2.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3. 시청자의 권익보호
- 4.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최다액출자자가 되거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 자는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 또는 지

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주식 또는 지분의 처분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와 승인 및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55條(會計處理) ① (생 략)

② 公社의 會計處理의 기준과 절차등에 관하여는 <u>企業會計基</u> 準 및 「정부기업예산법」을 準用한다.

<신 설>

第58條(運營計劃의 수립) ① 公社 의 社長은 第57條의 規定에 의 하여 豫算이 확정된 때에는 지

第55條(會計處理) ① (현행과 같
<u>♥</u>)
②
한국채택국
제회계기준
③ 공사는 제64조에 따른 텔레
비전방송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第58條(運營計劃의 수립) ①

체없이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당해연도의 豫算에 따른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략)

- 第59條(決算書의 제출) ① (생) 第 략)
 - ② 第1項의 決算書에는 다음 各號의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 다.
 - 1. (생략)

<신 설>

- 2. (생략)
- ③ ~ ⑤ (생 략)
- ⑥ 공사의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고, 공사의 사장은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